

민방위대 임무통지 안내문 추가 기재사항

□ 법정당연제외자 안내 및 신고의무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 아래 법정당연제외자에 해당되는 경우 사유발생 및 소멸 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편성제외 신청서” 제출

[법정당연제외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현역병 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연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외항선의 선원에는 외국여객선승무원을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단,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부터 6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생(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자)
-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스팸문자 피해예방을 위한 안내

- 2016년도 민방위 교육일정 등 민방위 관련사항 스팸(스미싱)문자가 발송되고 있으니, 문자 수신 즉시 삭제 바람